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 . (제 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지명경쟁입찰 대상금액기준 및 건설기술용역분야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금액기준을 개선하여 제도 실효성을 제고하며, 계약금액조정제도의 요건을 완화하고 입찰참가제한처분의 과징금 대체 가능 사유를 확대하여 입찰 참가 업체의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계약심의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하여 계약 과정에서 입찰 참가 업체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공사 입찰관련서류 전자조달시스템 게재 의무화(안 14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입찰관련서류를 전자조달시스템에 의무적으로 게재하도록 함

나. 지명경쟁입찰 대상 금액기준의 상향(안 제23조)

지명경쟁입찰 대상 금액기준을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의 경우 3억원에서 4억원으로, 같은법에 의한 전문공사의 경우 1억원에서 2억원으로, 그 밖의 공사관련 법령에 의한 공사의 경우 1억원에서 1억 6천만원으로 상향함

다. 수의계약 가능 사유 추가(안 제26조)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발굴조사용역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설립된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수의계약 가능 사유로 추가함

라. 건설기술용역분야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금액기준 상향(안 제42조)

건설기술용역분야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금액기준을 현행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경우 20억에서 50억으로, 같은 법에 따른 기본설계 용역의 경우 15억원에서 30억원으로, 같은법 실시설계용역의 경우 25억원에서 40억원으로 상향함

마. 단품계약금액조정제도 요건 완화(안 제64조)

단품계약금액조정제도의 요건을 현행 총 공사비의 100분의 1 초과에서 1000분의 5 초과로 완화함

바. 입찰참가제한처분의 과징금 대체사유 추가(안 제76조의2)

현행 입찰참가제한처분의 과징금 대체불가능 사유에서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4호, 동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1호 가목·라목을 제외함

사. 계약심의위원회 설치 의무화(안 제94조)

현행 재량사항인 계약심의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 ○ ○ ○ 부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예정

3) 행정규제 : 해당 없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본문 중 “한다”를 “하며, 보안상 비밀유지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교부”를 “교부(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 포함)”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23조제1항제2호 중 “3억원”을 “4억원”으로,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를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 이하”로,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공사를”을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 6천만원 이하인 공사를”로 한다.

제26조제1항제2호에 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문화재 발굴조사용역으로서 시굴조사 후 정밀발굴조사로 전환되는 등 문화재 발굴의 연속성 유지가 필요한 경우

제26조제1항제4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설립된 장애인표준

사업장

제42조제4항제3호 중 “20억원”을 “50억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15억원”을 “30억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25억원”을 “40억원”으로 한다.

제64조제6항 중 “100분의 1을”을 “1000분의 5를”로 한다.

제7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4호”를 “제5호”로, “영 제76조제2항제1호가목·나목·라목”을 “영 제76조제2항 제1호나목”으로 한다.

제9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설치·운영할 수 있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4조(공사의 입찰) ① (생략)	제14조(공사의 입찰) ① (현행과 같음)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 담당공무원은 입찰관련서류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열람하게 하고 교부해야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물량내역서를 작성하게 하는 경우에는 물량내역서를 열람 또는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 ----- ----- 하며, 보안상 비밀유지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하여야 한다. --- 제1항 --- ----- 교부(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 포함)-----.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 담당공무원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입찰관련서류를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함으로써 열람 또는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삭 제>
④ · ⑤ 삭제	
⑥ ~ ⑧ (생략)	⑥ ~ ⑧ (현행과 같음)
제23조(지명경쟁입찰에 의할 계약) ①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지명경쟁입찰에 부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3조(지명경쟁입찰에 의할 계약) ①-----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전문공사를 제외한
다)로서 추정가격이 3억원 이
하인 공사, 「건설산업기본
법」에 의한 전문공사로서 추
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그 밖의 공사관련 법령
에 의한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공사를 하거나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물
품을 제조할 경우

3. ~ 11. (생략)

② (생략)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
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
인 경우 등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 카. (생략)

<신설>

2. -----

----- 4억원 --

----- 전문공사로서 추정
가격이 2억원 이하-----

-----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 6천만원 이하인 공사를 -

3. ~ 11.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

-----.

1. (현행과 같음)

2. -----

--

가. ~ 카. (현행과 같음)

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
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3. (생략) 4.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등에게 일자리나 보훈·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등과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 계약(해당 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 및 직접 수행하는 용역에 한정한다)을 체결하거나, 그 단체 등에 직접 물건을 매각·임대하는 경우 가. ~ 라. (생략) <u><신설></u> 5. (생략) ② ~ ⑤ (생략) 제42조(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① ~ ③ (생략)	<u>따른 문화재발굴조사용역으로서 시굴조사 후 정밀발굴조사로 전환되는 등 문화재 발굴의 연속성 유지가 필요한 경우</u> 3. (현행과 같음) 4. ----- ----- ----- ----- ----- ----- ----- ----- ----- -----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u>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u>」에 따라 설립된 <u>장애인표준사업장</u> 5.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42조(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① ~ ③ (현행과 같음)
---	--

④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 담당공무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공사 또는 용역입찰에 대해서는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입찰자 중 각 입찰자의 입찰가격, 공사수행능력(용역입찰의 경우에는 용역수행능력을 말하며, 제40조제2항 단서 및 이하에서 같다) 및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 심사하여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1. 2. (생략)

3.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용역으로서 추정가격이 20억 원 이상인 용역

4.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른 건설공사기본계획 용역 또는 같은 영 제71조에 따른 기본설계 용역으로서 추정가격이 15억원 이상인 용역

5.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으로서 추정가격이 25억원 이

④ -----

-----.

1. 2. (현행과 같음)

3. -----

----- 50억 원 -----

4. -----

----- 30억원 -----
--

5. -----

----- 40억원 --

상인 용역

⑤ ~ ⑧ (생략)

제6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 ⑤ (생략)

⑥ 제1항 각 호에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의 경우 특정가격의 자재(해당 공사비를 구성하는 재료비·노무비·경비 합계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자재만 해당한다)별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입찰일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해당자재의 가격증감률이 100분의 15이상인 때에는 그 자재에 한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⑦·⑧ (생략)

제76조의2(과징금 부과에 세부적인 대상과 기준) ① 법 제27조의2제1항제1호에서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법 제27조제1항제2호, 같은 항 제4

⑤ ~ ⑧ (현행과 같음)

제6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1000분의 5를 -----

-----.

⑦·⑧ (현행과 같음)

제76조의2(과징금 부과에 세부적인 대상과 기준) ① -----

-----.

----- 제5

<u>호</u>부터 제7호까지, 이 <u>영 제76</u> <u>조제2항제1호가목·나목·라목</u> 및 같은 항 제2호나목·다목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1. ~ 7. (생 략) ②·③ (생 략) 제94조(계약심의위원회의 설치)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소 속기관의 장은 물품·공사·용 역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 한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하 여 계약심의위원회를 <u>설치·운</u> <u>영할 수 있다.</u> 1. ~ 3. (생 략) ②·③ (생 략)	<u>호</u>----- <u>영 제76</u> <u>조제2항 제1호나목</u> ----- ----- -----. 1. ~ 7.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94조(계약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 ----- ----- <u>설치·운</u> <u>영하여야 한다.</u> 1. ~ 3.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계약정책과	
연 락 처	(044) 215 - 5213